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결정 · 재결 통지 및 안내 의무 규정 〉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63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결정 · 재결 통지 및 안내 의무 규정	3

I. 제안경위

2026년 5월 26일 광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청구 등 재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청구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및 제109조의 규정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결정·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재심사 청구인이 결정·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5조제6항·제7항, 제109조제3항·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결정·재결 통지 및 안내 의무 규정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에 대하여 공단이 제105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보내고, 이 결정에 대한 재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제105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심사위원회가 제109조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재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고, 이 재결에 대한 재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안 제105조 및 제10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u>

<u><신 설></u>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심사 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심사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u><신 설></u>	④ 재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결을 통지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재심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03조) 그에 대한 심리·결정(제105조) 및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사 청구(제106조)와 재심

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제109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결정 및 재결과 관련하여 결정 통지 및 안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현행 「행정기본법」 제36조¹⁾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정하며 제6항에서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5항에서 정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심사 청구 및

-
- 1)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재심사 청구에도 적용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은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의 고지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58조²⁾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적용됨.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³⁾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2)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제96조제3항에 따른 심사 청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5. 주문
6. 심사 청구의 취지
7. 이유
8. 결정연월일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④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라고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3조가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제101조 등을 준용한다고 함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제101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용됨.

이상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및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본문에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고, 개정안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산업재해근로자인 심사 청구인과 재심사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이 충실하게 안내되도록 법률로서 직접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 법체계상으로도 산업재해근로자인 심사 청구인과 재심사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체계 상으로도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안내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를 별도로 명시할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며, 재해근로자의 실

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는 개정안이 쟁송수단과 제기 기간을 안내하는 것에 덧붙여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대한의사협회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확대에 의해 산재 관련 쟁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환·장해별 감정 문항 표준화, 디지털 기반 감정시스템 구축 등 의료감정 절차의 효율화와 함께, 감정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의료감정 수가를 현실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8